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유퍼스트보험마케팅(주)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7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과태료 30만원 부과
보험설계사	과태료 40만원 ~ 160만원 부과 : 3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(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)

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,

- 유퍼스트보험마케팅(주)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, 乙 2명은 2021. 9. 17. ~ 2021. 10. 28.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㉠보험 등 총 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(초회보험료 0.2백만원)을 A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.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8호

(2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(자필서명 미이행)

-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,
- 유퍼스트보험마케팅(주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19. 4. 9. ~2022. 3. 3. 기간 중 ㉠보험 등 총 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(초회보험료 0.3백만원, 수수료 1.8 백만원)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7호